

『인권연구』 8(1): 79-130.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8(1): 79-130.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5.8.1.79>

[일반논문]

##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진\*\* · 김상원\*\*\* · 이미연\*\*\*\*

한글초록

이 연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강조하는 ‘가정 기반 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과 제도적 의의를 검토하고, 서울시 A구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 그 운영 실태를 알아보았다. 2021년 도입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 아동의 분리 보호 여부와 대안 양육 방식에 대한 공적 판단을 수행한다.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담 요원의 의견에 기초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과 가족 기반 보호 원칙을 반영한 결정 과정을 구조화한다. 실제로 A구 사례결정위원회의 3년 6개월 간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회의 정례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 아동의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심의 체계의 구체화 및 표준화,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이 지속된다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아동 인권, 아동보호체계, 사례결정위원회

\* 이 논문은 2025년 A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모니터링으로 수행된 「2021년~2024년 A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보완·발전시켜 작성한 글이다.

\*\* 주저자: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김희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교신저자: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과정

목 차

- I. 서론
- II.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보호조치 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 III. 서울시 A구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 IV. 결론

## I. 서론

아동 인권의 국제적 준거에 해당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sup>1)</sup>이 전문과 개별 조항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가정’<sup>2)</sup>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는 아동이 최초의 가족으로 인지한 가정(child’s own family)<sup>3)</sup>, 다른 하나는 그 가정이 아닌 대안적 환경의 ‘가족 기반 보호(family based care)’<sup>4)</sup>이다. 이

- 
- 1)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심인권조약(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조약 제1072호로 1991년 12월 23일 발효되었다.
  - 2) 아동권리협약은 전문에서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안녕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이라고 밝히고, 제7조 제1항에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받을 권리(제8조), 아동 최상의 이익이 아닌 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제9조), 가족 재결합을 지원받을 권리(제10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국가의 책임(제18조, 제27조) 등도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
  - 3) 친부모와 함께 살던 가정은 물론, 아동과 애착이 형성된 조부모·친인척 양육 가정도 ‘원가정’으로 볼 수 있다.
  - 4) 가족 기반 보호는 국내법상 “가정과 유사한 환경(「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혹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으로 표현되는 가정형 보호(family-like care, family type care)와 구

중 후자에 관한 원칙과 방식은 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상실했거나 가정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제1항),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 양육을 보장해야 하며(제2항), 그 보호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 입양,<sup>5)</sup>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 시설의 양육을 포함한다(제3항)는 내용이다. 아동은 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살도록 지원받고 지지받을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가정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면 가정보호 형태의 대안 양육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집단생활시설도 대안 양육의 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만, 후자적인 고려 사항으로 언급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기념하며 제 6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해당 지침은 “시설보호는 특별히 합당하거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상 제한되어야 하고(UNGA, 2010: 21)”, “전체적인 탈시설의 맥락에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시설보호의)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UNGA, 2010: 23)”고 밝혔다.

그렇다면 가정보호 중심의 대안 양육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서 분명히 나타나듯, 보호의 여부를 포함한 대안 양육의 결정은 국가의 책임이다. 협약이 제시하는 국가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를 포함하며(CRC, 2003: 41-42),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의 권한 아래 대안 양육에서 아동의 권리

---

분되는 개념으로, 집단생활을 속성으로 하는 시설보호(residential care)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UNGA, 2010: 22; 이주연 외, 2023: 21-24.).

5) 아랍어 카팔라(Kafalah)는 “다른 아동을 돌본다”는 뜻으로, 이슬람법(sharia)에 근거한 수양자 제도이며, 무슬림의 종교적·도덕적 의무로 강주된다(UNICEF, 2023: 4-5). 가정위탁(foster care), 카팔라, 입양은 모두 ‘가정보호’의 형태를 말한다.

를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 내용은 유기를 비롯해 아동과 부모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동의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분리가 필요하다더라도 이는 영구적인 양육 환경을 목표로 가능한 한 일시적으로 단기에 한하는 것, 가족 기반의 양육 원칙과 시설보호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UNGA, 2010).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국가는 아동의 가족 유지(family preservation)를 위한 개입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아동이 부득이하게 가정환경을 상실했다면 가족관계의 회복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례관리, 부모 교육, 면접 및 방문권 보장 등을 제공할 수 있다(UNGA, 2010; UNGA; 2020). 만약, 일시적 분리의 기한 내에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이 어렵다면 이후로 변동되지 않을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조치하는 것(permanent alternative care, 영구적 대안 양육)도 국가의 의무이다.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에서도 그 중요성이 언급되었듯, 가정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보호 형태는 아동의 필요와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한다(UNGA, 2010).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책임과 권한, 전문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법과 제도에 점차 반영되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본격적으로 표방된 시점은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아동복지서비스 전반에서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아동복지법」도 민간의 아동복지시설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동보호의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개정법이 2018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sup>6)</sup>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6) 2016년 3월 「아동복지법」(법률 제14085호) 개정 전까지는, 보호대상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은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나 아동복지시설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자체장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장이 보호조치의 종료 및 퇴소, 보호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이 보호대상아동의 종료 및 퇴소를 조치하는 법 제16

제5·6차 심의를 앞두고 있던 2019년 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 초기 상담의 지자체 일원화, 아동의 분리 보호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체계화 및 아동과 부모의 면접교섭 지원, 전문가정위탁 도입,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19.5.23.).

아동보호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여러 작업이 논의되고 착수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고 2021년 6월 30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역 단위에서 아동보호 결정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할 만하다(정선욱·김형태·김미숙·공영숙·이수천, 2023). 아동의 보호조치(제15조), 퇴소조치(제16조),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제16조의3) 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초기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의견에 기초하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살피고 지자체의 개입 방향을 결정한다. 이는 곧,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지지받을 권리, 그리고 아동의 적절한 대안 양육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례결정위원회가 갖는 법·제도적 의미를 확인하고, 실제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논리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제Ⅱ장에서 사례결정위원회와 같은 지자체 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

조 제1항 개정안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보호대상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도록 하는 법 제15조 제3항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16조 제4항 개정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7)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의 책무부터 분명히 하였다. 제Ⅲ장은 A구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내용이다.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실태 및 아동보호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사례결정위원회가 갖는 의미와 함께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제Ⅳ장에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국가가 아동의 삶에 대한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기제(mechanism)이 니만큼, 행정적 심의 기구를 넘어 아동 인권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도의 실질을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로서,<sup>8)</sup> 아동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동시에 아동 인권 기반의 제도 개선에 더욱 정교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회도 될 것이다.

## II.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보호조치 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그 실행이 개별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담당자가 충실히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판단하는 공적 심의 절차는 한국은 물론 각국이 도입하는 제도적 해법 중 하나

8) 정선욱 외(2023)가 보고하였듯,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 위탁으로 수행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방안 연구(2022)’ 및 위 연구의 일부를 발췌·수정하여 작성된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2023)’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정석욱 외(2023)는 사례결정위원회 관계자(위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를 통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여기서 심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 연구의 결과는 사례결정위원회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능 정립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이 달라져야 하며,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있어야 하고, 아동과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다.

로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사례결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아동의 분리 보호 여부 및 대안 양육 방식의 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아동 중심으로 결정하기 위한 심의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 1. 사례결정위원회 제도 개관

### (1) 사례결정위원회 도입 경과와 입법 취지

아동보호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구조적 책무와 긴밀히 연결된다. 중앙정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방향성과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개별 사례의 판단과 자원 연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결정 구조를 마련할 책무를 가진다.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사례결정위원회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부터,<sup>9)</sup> 필요한 경우 단기에 한하는 일시적 분리 보호<sup>10)</sup>와 가족 재결합의 적극적 지원, 안정적인 대안 양육 체계의 마련까지 아동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을 실천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 의사결정 체계를 제도화한 중요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 
- 9)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 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와 제2호(「민법」 제77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보호조치의 한 유형이며, 가정 외 보호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원가정 보호”의 조치도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
- 1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를 때 일시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아니다(보건복지부, 2025b: 168). 자세한 내용은 “II-1-2) 사례결정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에 후술하였다.

(정선욱 외, 2023).

실제로 사례결정위원회가 제도화된 배경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밝힌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더불어, 2019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었는데,<sup>11)</sup> 당시 감사원(2019: 32)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전·사후 보호조치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통해 보호조치를 의결한 지자체는 24개였던 반면, 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사후 심의를 했다고 보고한 지자체는 72개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보호조치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지자체는 4개였고, 3회 이상 개최한 곳도 80개에 불과했으나,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적합한 보호조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sup>12)</sup> 감사원(2019: 33-34)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한 2,549명의 아동 중 72.4%(1,846명)가 아동양육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보호조치되었고, 가정보호(입양, 가정위탁)는 703명(27.6%)이었던 결과도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라 지적하였다.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의 결정이 사전에 검토되도록 하고, 그 판단도 개별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안)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아동학대 사례의 급속한 증가도 사례결정위원회 도입이 타당한 이유로 논의하였다. 학대피해아동을 포함해 보호대상아동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11) 보건복지부 감사기간은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4일이다(감사원, 2019: 32).

12) 2022년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에서도 연 4회 이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열린 지자체는 8개(3%)였고, 1회도 열리지 않은 지자체가 114개(47%)로 나타났다(정선욱 외, 2023: 218).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김상희의원안을 포함해 2020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2월 2일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84호로 공포되었다. 그에 따라 변호사, 의료인, 아동복지 전문가, 아동심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수행한 초기상담 및 사례 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방향을 결정한다.

다만, 감사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보호 심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고(감사원, 2019:34),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형식적·관례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신향진, 2020: 59), 이러한 내용이 잘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과거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들 수 있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sup>13)</sup>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이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의 지도·감독이나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여전히 부재하다.

그래도 과거에는 소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들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이 사례결정위원회 의무적 설치로 개선되고,<sup>14)</sup> 시·도에서는 4급 이상,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하여 권한의 충위를 확보하며,<sup>15)</sup>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확장<sup>16)</sup>하는 변화는 있었다. 사례결정위원회가 개별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

13)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2021. 6. 29. 개정되기 전) 제13조의2.

14)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1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16)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2021. 6. 29. 개정되기 전) 제13조의2,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기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침상 분명히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5b: 4).<sup>17)</sup> 사례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와 지방정부의 사례 지원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서, 공동의 의무를 이행하는 실효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다.

## (2) 사례결정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sup>18)</sup>

상술하였듯,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 아동복지정책의 전문성·충실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기구”이다.<sup>19)</sup>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해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이나 보호조치 종료 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0)</sup>

사례결정위원회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아동보호팀)가 지원한다. 즉,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학대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변경·종료 등을 판단해야 할 때, 이를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sup>21)</sup>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다. 다

---

17)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시 활용하도록 제공되는 체크리스트 서식도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었는가”를 주요항목으로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25b: 170).

18) 사례결정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은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의 제3부 부록에 다루어진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25b: 162-178).

19)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1쪽.

20)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5쪽.

21)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6쪽.

만, 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②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이나 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③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그리고 ④ 같은 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나 ⑤ 「아동복지법」 외 타법에 근거해 설치된 시설 입소로 보호를 종결하는 경우<sup>22)</sup>는 지침상 의무적 사전·대면심의 안전에 해당한다.<sup>23)24)</sup>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전·대면 의무안전”으로 제시된 이외의 안전들은 지자체가 사전 또는 사후심의, 대면 혹은 서면의 심의 방식을 결정한다.<sup>25)</sup>

아동의 보호조치 여부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단위는 기본적으로 시·군·구(기초 지방자치단체)이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장소와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상이하거나 아동의 보호 배치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과 같이 시·군·구간 역할 조정 및 총괄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sup>26)</sup>

2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등의 타법 시설로 가게 될 경우, 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사례관리가 종결되는 “보호조치 종료”에 해당한다. 다만, 타법 시설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 아동보호팀은 5년간 1회(최초 1주일 이내 방문 포함) 아동의 보호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5b: 100).

23)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6쪽.

24) 2024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대면심의 의무안전에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아동복지법」 제16조의4 제1항(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조치 재실시, 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결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보건복지부, 2024: 146).

25)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7쪽.

보호조치 결정의 심의에는 대상아동의 욕구조사표, 아동 상황 점검표, 친부모 상황 점검표,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서, 사례회의 회의록 등이고, 보호조치 변경 시에는 양육상황 점검표를, 보호조치를 종결할 때에는 종결심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2025년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용 심의·의결시 체크리스트, 가치충돌 상황 및 확인사항(예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양식 등이 관련 서식에 추가되었다.<sup>27)</sup> 특히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용 체크리스트는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아동 최상의 이익과 가정보호 원칙<sup>28)</sup>에 따른 결정인지, 원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였는지 등을 항목으로 제시해,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 인권의 원칙을 이행하는 기구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침은 아동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혹은 영향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의무적 사전·대면심의 안전이라고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를 비롯해 보호대상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보호조치는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일시보호 중인 아동의 중장기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3개월 이상 일시보호조치를 연장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사례결정위원회가 일시보호 연장의 안전을 논의할 때에는 가정복귀 가능성 및 중장기 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하도록 명시하여, 가정보호의 원칙도 상기하고 있다.<sup>29)</sup>

앞서 보았듯,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중장기 보호조치가 가정 외 보호인 경우(3호부터 6호)도<sup>30)</sup> 사전·대면심의 의무 안전에 해

26)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7쪽.

27)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70~178쪽.

28) 원문은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는가?”로 제시되어 있다.

29)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8쪽.

당한다. 이후 중장기 보호조치의 변경이 가정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가정위탁→시설) 아동의 생활반경이 현저히 달라져 아동에게 미칠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대면심의 사항이다. 반면, 가정보호 원칙의 이행이거나(시설→가정위탁), 가정위탁의 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18세에 달한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혹은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는 보호조치 변경은 사후·서면심의로도 가능하다고 분류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이나 제3항에 근거해 종결하는 경우에도,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가 의무이다. 보호 종결 안건이 18세 이후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아동이나 재보호조치된 아동 사례라면 사후·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아동이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사전·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sup>31)</sup> 부모의 입양동의 철회에 따라 원가정 복귀<sup>32)</sup>를 검토하는 경우는 사후·서면심의 가능한 사안이며,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은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sup>33)</sup>

마지막으로, 보호조치나 보호조치의 종결 외에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데, 2025년 지침에서는 이러한 안건을 사후·서

30)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비공식 친족 돌봄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을 넓은 의미의 원가정 보호로 분류한다. 즉, 분리 보호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으로 보호된 아동이 만 18세에 이르렀거나 가족재결합(원가정 복귀) 등으로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보호 종료를 결정할 때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 안건에 해당한다.

31)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2항.

32) 입양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던 중 부모가 입양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은 사후·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

33)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69쪽.

면심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2024년까지는 운영 기준상 보호조치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그밖에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던 것과 비교해 볼 때(보건복지부, 2024: 149), 의미 있는 변화다. 전반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2. 아동보호 심의 절차의 국외 사례

영국은 198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에 아동복지 최우선(the welfare of the child is paramount) 원칙을 분명히 하였고, 아동보호체계를 이행하는 책임 주체를 지방 당국(Local Authority)으로 규정한다. 참고로 2004년 개정된 「아동법」은 각 지역에 설립하는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이하 LSCBs)’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LSCBs는 2018년 제정된 「아동 및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에 근거해 폐지되었다. 현재는 아동보호에 관해 지방 당국, 해당 지역의 보건 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s), 경찰청장(Chief Officer of Police)이 동등한 의무 아래 공동으로 협력하는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y Safeguarding Arrangement)가 작동하고 있다(HM Government, 2023: 23-24). 아동보호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 책무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 다학제적 접근, 기관 간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동보호의 절차이다. 먼저, 「아동법」의 제47조<sup>34)</sup>는 아동이 심각한 위해를 받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에 대한 지방 당국이 이를 조사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지방 당국은 조사 결과, 아동이 중대한 위협

---

<sup>34)</sup> Children Act 1989 - Section 47. Local authority's duty to investigate(지방당국의 아동보호 조사 의무)

에 처했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련된 지침<sup>35)</sup>에 근거해 아동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를 개최해야 한다.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보호 담당 사회복지사(Lead Social Worker), 경찰, 교사, 보건 전문가,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심의 기구로, 아동보호계획(Child Protection Plan)의 수립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아동의 의견 반영을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한다. 아동보호협의회는 보호조치 전략 논의(Strategic Discussion) 이후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 회의를 통해 아동보호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지방 당국의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동보호협의회 후 10일 이내에 전담 실무조직(Core Group)을 구성해 보호계획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해당 계획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한다(HM Government, 2023: 79-105).

스웨덴도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점차 강화한 모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에서 아동보호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는데,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보호조치는 「사회서비스법」(Socialtjänstlagen)에 규정되어 있다. 또 다른 방식의 아동보호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Lag med särskilda bestämmelser om vård av unga, 이하 LVU)은 한국의 법체계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보호자의 학대 등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건강이나 발달을 위협할 때, 혹은 청소년의 행동이 본인의 건강과 발달을 위협할 때에 지방 사회복지위원회가 법원에 강제 보호조치(tvångsvård enligt LVU)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Socialstyrelsen, 2019).<sup>36)</sup>

35)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은 아동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력을 지원하는 법적 지침이다. 해당 문서는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아동을 분리 보호할 수 있고, 치료·상담·교육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학대와

이러한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에서 아동보호의 책임 주체는 지방 당국(Kommun)이고, 당국의 사회복지위원회(Socialnämnden)<sup>37)</sup>가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을 담당한다고 정한다.<sup>38)</sup> 아동에게 보호가 필요한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 당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Socialsekreterare)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즉각 사정할 의무가 있으며(Förhandsbedömning)<sup>39)</sup>, 필요시 임시 보호조치(Tillfälligt omhändertagande)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다.<sup>40)</sup> 임시 보호조치를 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법원에 보호명령(beslut om vård med stöd av LVU)을 신청해야 한다.<sup>41)</sup>

임시 보호조치의 예외적 적용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sup>42)</sup> 일반적인 절차는 지방 당국이 주관하는 전문가 협력을 거쳐 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관련 지침서는 조사 중 협업(Samverkan under en utredning)을 통해 아동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Planera utredning) 및 정보 수집(Inhämta uppgifter) 단계에서 “(의료인, 심리 전문가, 교육 관계자 등) 다른 전문 분야 및 기관 간 협력”<sup>43)</sup>의 원칙<sup>44)</sup>을 강조

---

같이 가정 환경적 요소로 아동을 가정 외 보호하는 것 외에, 한국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 비행 예방에 대한 공적 개입도 같은 법에 근거하는 것이다. 즉, 스웨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들이 복지 기반 접근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37)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38) 제1장 제2조 및 제6장 참조.

39) 초기 사정의 목적은 조사의 시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단계에서 어떤 조사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Socialstyrelsen, 2023a: 112).

40) 「청소년보호법」 제6조.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긴급상황에서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아동·청소년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다.

41) 「청소년보호법」 제7조.

42) 국내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 응급조치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43) Grundprincip 5: Ske i samverkan med andra professioner och verksamheter.

한다(Socialstyrelsen, 2023a: 88-95).<sup>45)</sup> 해당 협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가 필수로 요청되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며,<sup>46)</sup> 사회복지위원회는 보호조치 이후,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최소 6개월마다 1회) 한다.<sup>47)</sup> 스웨덴에서도 아동의 보호 필요와 방식, 모니터링 전반에 대한 공적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다만 행정기구의 판단과 집행이 아동 최상의 실현일 수 있도록 전문가 협력을 통한 조사와 계획 수립을 절차상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은 범죄 피해자 아동이나 범죄 목격자 아동에게 특화된 바르나후스(Barnahus) 모델을 운용하는데, 수사기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법률기관 등이 한 공간에 모여 조사를 진행해 아동의 보호·의료·심리·법적 보호를 논의하는 구조이다.<sup>48)</sup> 다기관이

---

44) 스웨덴 아동보호서비스는 다음의 7가지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다, (2) 아동 최상의 이익을 결정 기준으로 한다, (3)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5) 다른 전문 분야 및 기관과 협력한다, (6) 문제를 예방하고 자원을 강화한다, (7) 전체론적 관점에서 아동과 그 상황을 고려한다(Socialstyrelsen, 2023a: 14)

45) 다만, 우리나라 사례결정위원회, 영국의 아동보호협의회와 달리, 스웨덴은 공식 협의체가 없고 다기관 전문가와 협의하며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한다.

46) 「사회서비스법」 제11장 제3조에 따라 사례회의는 아동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법」 제11장 제10조에 근거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아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참여를 보장할 책무를 지닌다. 스웨덴 사회복지 지침서는 아동에게 의견을 표현할 의무는 없으며, 아동이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이들의 태도나 감정을 아동과 가까운 이들로부터 유추하는 등 그 입장을 가능한 방식으로 파악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Socialstyrelsen, 2023a: 19-20; Socialstyrelsen, 2023b: 129-134).

47) 「사회서비스법」 제6장 제8조.

48) 바르나후스 모델은 2005년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아동은 심문 당시 증인이자 피해자로 존중받으며 진술은 단 한 번 녹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술 녹화, 전문가 동시 협의, 심리치료 연계 등의 요소

심의하고 결정하는 형태이지만, 운영 방식은 지방정부 중심의 원스톱 모델에 가깝다는 게 특징으로,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심리치료, 법률적 개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바르나후스는 전문가 협력의 강점과 더불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아동보호체계의 의미를 보여준다.

그밖에 호주는 연방국가의 특성상 주(State)와 준주(Territory)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각 주의 담당 부처<sup>49)</sup> 내 아동보호 실무자<sup>50)</sup>가 주관하면서, 회의 조정자(Convenor/Facilitator)<sup>51)</sup>를 통해 개최하는 가족 중심 협의체<sup>52)</sup>를 운영하고 있다.

---

를 포함해, 반복적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49) 예를 들어, Department of Child Safety, Seniors and Disability Services,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Justice and Multicultural Affairs, Department of Child Protection.

50) 호주의 퀸즐랜드(Queensland)는 아동보호 담당 실무자를 Child Safety Officer(CSO)로 지칭하지만, 빅토리아(Victoria)는 Child Protection Practitioner라고 한다. 주의 법령이나 시스템이 따라 실무자를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상이하다. 선주민 아동의 보호가 중요한 지역에서는 Indigenous Liaison Officer나 Aboriginal Child Protection Worker가 실무자와 함께 활동한다.

51) 회의 조정자 역시 주/준주마다 명칭, 소속,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다만, 대체로 이들은 정부 소속이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의 담당자가 맡으며, 지위가 독립적이고 사례조사나 사례관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퍼실리테이터에 가깝다. 예를 들어, 지역 NGO나 공공기관에서 위촉되기도 하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의 조정자들은 아동보호 사례에서 중립성 확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가족 중심 협의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의 퀸즐랜드는 회의 조정자를 FGM Convenor,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는 Case Conferencing Chairperson이라고 부른다.

52) 퀸즐랜드는 Family Group Meeting(FGC),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는 Family Care Meeting, 빅토리아는 2012년부터 FGC를 Aboriginal family decision making과 통합하여 Family-led Decision

아동보호 실무자는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 부모, 서비스 제공자 등과 개별 면담을 시행하며, 특히 선주민 아동에 대하여는 이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는 독립적 구성원(Independent Person)<sup>53)</sup>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운영하고 있다(Department of Children, Youth Justice and Multicultural Affairs, 2022: 15). 협의체를 통해 수립된 보호계획은 아동보호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시스템에 기록되고, 이후 필요시 법원과 연계하여 처리한다.<sup>54)</sup> 가족 중심 협의체를 통해 작성된 아동의 사례 계획은 최소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한다.<sup>55)</sup>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심의’ 절차는 아동보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우연의 결과가 아닌, 공적 책무의 틀 안에서 보호 형태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서로 다른 역량이나 공무원의 인적 특성이 아동보호체계의 내용과 결과를 달리할 우려도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특히 협의체 혹은 심의 기구는 행정의 역량을 보완하여, 아동의 의견 청취, 보호자와 가족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가정보호의 실천에도 이바지한다고 평가할 만하다.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한 전문가

---

Making(FLDM)으로 운영하는 등 가족 중심의 협의체이지만 회의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다.

- 53)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가족이나 지역 원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특정인 등이 이 역할을 한다. 단, 아동이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54) 보호계획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법적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법원(Children’s Court/Youth Court)을 통해 결정한다, 법원은 보호조치 승인 및 명령권한을 가지고 있다.
- 55) 다만, 아동의 연령, 상황 또는 발달적 필요, 아동의 안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사례 계획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더 자주 검토될 것이 권장된다(Department of Children, Youth Justice and Multicultural Affairs, 2022: 18).

협력 기반의 아동보호 심의 체계의 구조적 타당성은 다수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II. 서울시 A구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 지자체에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실질화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작성되는 2025년 5월 현재까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경향이나 아동보호의 내용을 다룬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며,<sup>56)</sup> 사례결정위원회의 실효성 및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 이에 제Ⅲ장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실제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때부터 3년 6개월 간의 회의록을 검토하여, 보호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작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은 아동보호의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제도적 의미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 기반의 제도 보완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1. 분석의 방법 및 내용

연구자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 A구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

<sup>56)</sup> 정선욱 외(2023)가 논문으로 발표한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연구”는 아동권리보장원 위탁으로 수행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방안 연구(2022)”의 일부 내용을 발췌·수정한 것이라고 밝히는데,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제시된 “최초 사례결정위원회 분석 보고”는 내부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논문에서 다뤄진 논의 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sup>57)</sup> A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의 협조를 받아 2021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된 약 3년 6개월의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다만,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록은 아동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내부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체계 흐름도에 기초한 일차적인 정리 작업은 A구 아동청소년과의 상근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자가 선행하였고, 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머지 두 연구자가 심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코딩하는 절차를 거쳤다. 후속 작업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 확인하였다.

회의록을 재구성한 기준은 「아동복지법」과 근거한 법적 틀과 국가승인통계의 지표이다.<sup>58)</sup> 회의록에 기술된 보호대상아동 발생경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필요한 경우에 조치하는 일시보호의 내용, 중장기 보호조치의 내용, 18세 달한 이후의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구성하였다.<sup>59)</sup>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변화, 기간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권리 실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

57) 1명은 A구 소속의 상근직 옴부즈퍼슨(공무원)이고, 2명은 위촉직 옴부즈퍼슨이다.

58)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제117034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여기에서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은 “유기(2017년 부터 기아를 유기로 변경),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교정시설입소, 부모이혼 등”으로 분류된다.

59)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한 자립준비청년의 재보호조치, 제18조에 따른 아동의 친권행사 제한이나 상실,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등도 심의할 수 있으나(「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지난 3년 6개월 간의 회의에 해당 사항들이 다뤄진 적은 없었기에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는 표에는 생략하였다(<표 1> 참조).

<표 1>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재구성과 코딩의 틀

최초 발생원인			보호기간		
일시 보호	법	일시보호조치 시점/연령	일시 보호 기간		
	제15조 제6항	일시보호조치 내용			
	법 시행규칙	일시보호조치 연장 시점/연령			
	제26조 제1항	일시보호조치 연장 내용			
중장기 보호	법	중장기 보호조치 사유	중장 기 보 호 기 간	가 정 외 보 호 총 기 간	
		중장기 보호조치 시점/연령			
		중장기 보호조치 내용			
		중장기 보호조치 (1차) 변경 사유			
		중장기 보호조치 (1차) 변경 시점/연령			
		중장기 보호조치 (1차) 변경 내용			
		중장기 보호조치 (2차) 변경 사유			
		중장기 보호조치 (2차) 변경 시점/연령			
	중장기 보호조치 (2차) 변경 내용				
	법	제16조의3 제1항			(18세 이상) 보호기간 연장 사유
					(18세 이상) 보호기간 연장 시점/연령
		(18세 이상) 보호기간 연장 내용			
보호 종결	법	제16조 제1항	보호조치 종결 사유		
			보호조치 종결 시점/연령		

덧붙여, <표 1>에 제시한 일시보호의 결정(학대피해아동 분리 보호의 응급조치 포함한 수치)<sup>60)</sup>은 원칙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회의록에서 일시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알 수

6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 보호 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제12조 제3항),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청구되었다면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따른 분리 보호조치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분리 기한의 한도를 정하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는 기본적으로 일시보호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의 분리 보호도 일시보호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내용은 “Ⅲ-2-(4) 일시보호의 유형과 내용”에 후술하였다.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하는 전체적인 맥락과 경향성을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보호조치의 유형이나 내용에 모호한 점은 확인을 거쳤지만,<sup>61)</sup> 회의록에 언급되지 않은 보호조치의 시작 시점이나 보호조치 변경 이전에 조치된 내용 등은 추가 정보를 구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의 원칙에 맞게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되는지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연구 목적이었기에, 회의록의 공백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짚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각각 법학 및 사회학, 아동학, 유아교육과 공공정책 전공자로서, 서로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교차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코딩한 결과를 반복하여 살폈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그 의미의 해석이 아동권리 관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 2. 분석 결과

### (1)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빈도와 안건의 내용

개발 아동을 기준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A구에서는 총 477개의 사례가 논의되었다. 같은 아동에 대해 심의가 한 번 있었던 경우는 389건이고, 보호조치의 변경 또는 종결 등으로 두 차례 이상 심의된 경우는 42건(2회 38건, 3회 4건)이며, 전체 보호대상아동 수는 43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회의 6회 및 95개 안건(19.9%), 2022년에는 회의 12회 및 150개 안건(31.4%), 2023년에는 회의 10회 및 103개 안건(21.6%), 2024년에는 회의 18회 및 129개 안건(27.0%)이

---

61) 가령, 보호조치 유형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인척 가정위탁”으로 제시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의 보호조치를 말하는 것인지, 제3호의 가정위탁 보호조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루어졌다. 회의 횟수를 월평균으로 보면, 2022년에는 월 1회, 2023년에는 월 0.8회, 2024년에는 월 1.5회였고, 안건이 하나일 때에도 회의가 개최되었다. 출생 아동은 물론 보호대상아동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서,<sup>62)</sup> 회의 횟수나 안건 수가 늘어난 결과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증거라 볼 수 있다.

한편, A구에는 입양기관이 소재하는데,<sup>63)</sup> 전체 477건의 사례 중 319건(66.88%: 입양대상아동선정 25건, 입양대상아동종결 276건, 입양대상아동철회 18건)이 입양과 관련된 사안이었다(<표 2> 참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양의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외 입양의 성립 외에 입양알선의 곤란이 보고되거나, 부모가 입양을 의뢰하였다가 입양 동의를 철회한 경우로서 보호조치 변경이나 원가정 복귀가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진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입양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 외에 입양 추진 경과나 결과에 대한 안건은 입양기관이 있는 지역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만 다뤄질 것이므로, 이는 A구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특성에 해당한다.

---

62)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꾸준히 줄고 있다. 통계가 제시하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0.977, 2019년 0.918, 2020년 0.837, 2021년 0.808, 2022년 0.780, 2023년 0.720이다(통계청, 2024). 2024년 잠정 발표된 출생·사망통계에서는 2023년보다 출생아 수가 3.6% 증가하여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보고되나, 감소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통계청, 2025.02.26). 최근 5년간의 보호대상아동 수(시설입소 또는 가정보호로 조치된 보호대상아동 수 및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된 아동 수 합계)는 2018년 4,538명, 2019년 4,612명, 2020년 5,053명, 2021년 4,521명, 2022년 3,756명, 2023년 2,796명이다(통계청, 2025). 출생률과 비교해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아동 인구수 감소와 함께 보호대상아동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3) 전국에 입양기관은 기관 본부와 지부를 포함해 18개소가 있다(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복지기관 현황).

## (2) 심의 안건의 내용과 경향

지난 3년 6개월간, A구 사례결정위원회는 회의록에 표기된 안건 명<sup>64)</sup>을 기준으로 총 10개 유형의 안건을 심의하였다(<표 2> 참조).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가정보호<sup>65)</sup>가 적극 모색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sup>66)</sup> 구체적으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안건 중 가정보호가 결정된 건은 전체 37건 중 23건(약 62.2%)이었고, ‘보호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은 전체 35건 중 원가정 복귀가 14건 및 입양에 따른 종결이 4건으로 약 절반 정도(약 51.4%)였다. ‘입양대상아동 철회’ 안건의 전체 18건은 모두 가정보호로 변경된 사례인데, 16건은 가정복귀, 2건은 가정복귀를 목표로 하는 가정위탁 보호조치 변경이었다. ‘학대피해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의 전체 14건 안건도 원가정 복귀에 따른 종결이 10건(약 71.4%)에 이르렀다. 회의록만으로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안건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되었다가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변경 등의 사례가 포함되

64) 회의록상 안건명은 총 10개였다: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 보호출산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입양대상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 입양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 입양대상아동 철회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여부 사례판단에 관한 사항.

65) 앞서 각주 4)에서 밝혔듯, 여기서 ‘가정보호’란 친족돌봄(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입양(「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보호조치를 말한다. 다만, 심의 결과가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예정’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가정위탁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고 가정보호로 분류하였다.

66) 본문에서 언급한 가정보호가 결정된 사례는 <표 2>에서 회색 칸으로 구분하였다.

었다. 이처럼 안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보호로 변경하는 조치나 원가정 복귀 조치가 꾸준히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혹은 가정위탁 보호조치로 변경된 사례는 모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였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2022년 이후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 안전의 비중이 커진 것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만으로 보호조치 연장이 가능하게 된 「아동복지법」 개정<sup>67)</sup>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관련 통계를 볼 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령도달 자립준비청년<sup>68)</sup>의 비중이 보호기간 연장 자립준비청년보다 더 컸던 반면, 2020년과 2021년에는 보호기간 연장 자립준비청년이 더 많았다.<sup>69)</sup> 대학 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보호대상아동 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6월부터 아동의 개별 상황에 따라 원하는 만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연장보호의 경향이 더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이상정, 2022).<sup>70)</sup>

67) 사례결정위원회 도입 이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기준을 완화하는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이 신설되었다(2021년 12월 21일 개정, 2022년 6월 22일 시행). 이전까지는 “대학 재학, 직업 관련 교육·훈련, 그 밖의 필요(20세 미만으로 학원 교육, 장애·질병, 자립 능력 부족, 취업 준비)”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25세에 달할 때까지(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68)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69) 연도별 ‘연령도달 자립준비청년의 비율’/‘보호기간 연장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이상정, 2022): 2016년 - 53.9%/47.1%; 2017년 - 55.8%/44.2%; 2018년 - 59.8%/40.2%; 2019년 - 50.7%/49.3%; 2020년 - 42.2%/57.8%; 2021년 - 41.1%/58.9%.

70) 참고로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공표하는 <자립준비청년 현황>에 보호시설 별 자립준비청년 수만 보고하며, 이른바 18세에 달하여 보호를 중

<표 2> 연도별 안건 분류 (2021-2024)

안건	'21	'22	'23	'24	전체
<b>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에 관한 사항</b>		15	20	9	44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		15	20	9	44
<b>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sup>71)</sup></b>	9	8	10	10	37
보호대상아동 선정(가정위탁)	2	5	2	3	12
보호대상아동 선정(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1	1		2
보호대상아동 선정(시설보호)	3		3	2	8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가정위탁→가정위탁)	1				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시설보호→가정위탁)				3	3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시설보호→공동생활 가정)		1			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시설보호→입양대상)	1	1	3		5
보호대상아동 전원조치 <sup>72)</sup>	2			1	3
보호대상아동 보호 일시중지			1	1	2
<b>보호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b>	9	9	6	11	35
보호연장아동 종결				3	3
연령도래에 따른 종결		5	5	2	12
요보호아동 입양에 따른 종결	4				4
원가정 복귀에 따른 보호 종결	5	4		5	14
타법시설 입소에 따른 종결			1	1	2
<b>보호출산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b>				6	6
보호출산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입양대상아동 선정 병행조치				6	6
<b>입양대상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b>	13	4	2	6	25
입양대상아동 선정	12	4	2	4	22
입양대상아동 선정 및 시설보호 병행조치				2	2
입양신청아동 일시보호 조치	1				1
<b>입양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b>	48	97	56	75	276
국내 입양 성립	31	63	37	36	167
국외 입양 성립	17	31	18	34	100
입양대상아동 사망에 따른 종결		1			1
입양알선 곤란아동 보고				5	5
타법 시설 입소에 따른 종결		2	1		3

료하는 ‘만기퇴소’와 ‘연장종료’의 수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안건	'21	'22	'23	'24	전체
<b>입양대상아동 철회에 관한 사항</b>	<b>5</b>	<b>9</b>	<b>1</b>	<b>3</b>	<b>18</b>
친생부모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가정위탁)		1		1	2
친생부모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원가정 복귀)	5	8	1	2	16
<b>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b>	<b>8</b>	<b>6</b>	<b>1</b>	<b>6</b>	<b>21</b>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근거 변경 <sup>73)</sup>	7	6	1	5	19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연장				1	1
친족보호 아동 가정환경 점검	1				1
<b>학대피해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b>	<b>3</b>	<b>2</b>	<b>7</b>	<b>2</b>	<b>14</b>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에 따른 종결	1	2	5	2	10
학대피해아동 타법시설 전원에 따른 종결	2				2
학대피해아동 전원에 따른 종결 <sup>74)</sup>			2		2
<b>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여부 사례판단에 관한 사항</b>				<b>1</b>	<b>1</b>
학대피해의심아동 학대여부 사례판단				1	1
<b>총 합계</b>	<b>95</b>	<b>150</b>	<b>103</b>	<b>129</b>	<b>477</b>

- 71) 시설보호에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보호조치가 있으나, 관행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조치’를 ‘시설보호’라 쓰고, 공동생활가정에 보호를 조치할 때에는 ‘공동생활가정’을 명시하여 쓰고 있었다. <표 2>는 사례 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가급적 회의록의 언급을 그대로 살렸다.
- 72)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을 달리하는 조치로서, 보호조치의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 73)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근거 변경’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응급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분리 보호가 시작된 이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로 보호의 근거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례에는 일시보호조치를 아동양육시설에서 하다가 아동양육시설의 증장기 보호로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근거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다가 가정위탁으로 변경한 경우 등이 있었다.
- 74) 학대피해아동의 응급조치 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분리 보호 중이었으나, 거주하던 시설 종사자의 학대가 발생하면서 보호조치 변경을 논의한 사례이다. 즉,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증장기 보호조치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근거 변경’으로 볼 수 있겠으나, 회의록의 안건은 ‘학대피해아동 종결에 관한

(3) 최초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중복사례 제외)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 여부가 논의된 전체 아동 431명의 72.4%에 해당하는 312명에 대한 안건에서는 회의록상 발생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입양, 보호대상 아동 보호연장, 보호종결 등과 같이 최초 보호조치 이후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례들이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현시점에서 파악되는 정보 범위 내에서만 조심히 살펴 경향성을 가늠해 보려는 목적으로, <표 3>을 구성해 보았다.<sup>75)</sup>

그 결과, 가장 많은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은 학대(8.6%)였고, 다음으로 미혼부모·혼외자(8.4%)의 사유가 많았다.<sup>76)</sup>

<표 3>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빈도	%
유기(베이비박스)	6	1.4
유기(베이비박스 이외의 경우)	4	0.9
미혼부모·혼외자	42	9.7
학대	37	8.6
부모 빈곤·실직	7	1.6
부모사망	6	1.4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 75) 피해아동보호명령 중인 학대피해아동을 비롯해 일시보호 중 원가정의 사정변경으로 중장기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는 최초 발생원인은 학대이나, 중장기 보호조치의 직접적인 사유가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빈곤·실직 또는 유기(부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것이다. <표 3>의 결과는 최초 발생원인만 제시한 것이다.
- 76) 회의록에는 서술형으로 '아동의 발생경위'나 '사례개요'가 작성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분류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스템에 기록한 발생원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류한 기준을 몇 가지 예로 들자면, 관련 내용에 '미혼모' 또는 '한부모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있거나, '친부' 또는 '친모'만 언급된 사례는 '미혼모자·혼외자'로, 유일한 보호자인 친부나 친모가 연락이 끊긴 경우는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표 3>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과 그렇지 않은 유기 아동을 구분해 두었다.

부모 질병	1	0.2
부모 교정시설 입소	5	1.2
부모이혼	4	0.9
보호출산 <sup>77)</sup>	7	1.6
정보 없음	312	72.4
<b>합 계</b>	<b>431</b>	<b>100</b>

#### (4) 일시보호의 유형과 내용

아동의 가정 외 보호로서 일시보호의 결과도 살펴보았다.<sup>78)</sup> 해당 분석은 일시보호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61건의 사례만을 분석한 것으로, 가정 외 보호의 초기 단계에서 일시보호 논의 없이 곧바로 중

77) 2024년 7월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A구에는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보호 의뢰된 아동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보호출산은 임신부의 신원을 비식별화하기 때문에 미혼부모나 이혼 등의 사유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을 이유로 제시하는 제1조에 비추어 ‘부모 빈곤 등’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승인통계에 따른 어떠한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에 해당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표 3>에서는 보호출산의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78)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최초의 일시보호조치 결정 및 일시보호(3개월 미만) 후 가정 복귀하는 사안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무적 심의 사항이 아니다.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도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즉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그 연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일 수도 있으므로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게 일시보호가 지속될 수 있다. 즉, <표 4>의 분석 결과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일시보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아동보호체계 전반에서 일시보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사례결정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시사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장기 보호가 결정된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

안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61건 중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학대피해아동 종결’에 해당하는 학대피해아동 사례가 52.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보호대상아동 종결’ 안전 중에도 최초 발생원인이 학대인 경우(응급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학대로 인한 분리는 그 기간이 법상 규제되는 만큼 일시보호의 관점이 주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만하다.<sup>79)</sup>

한편으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설된 즉각분리 규정은<sup>80)</sup> 도입 당시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여 분리 보호가 남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었는데(신수경, 2021: 21-22), A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기준, 학대피해아동이 동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해 일시보호조치되었던 경우는 전체 61건 중 14건(약 23.0%)이었다. 이는 즉각분리의 결정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표 4>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일시보호의 대다수 사례가 중장기 보호로 이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입양 의뢰된 아동은 일시보호 과정에서 가정복귀 가능성을 탐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사례(7건, 약 11.5%)의 경우 친인척(연고자) 위탁으로 일시보호가 이루어졌다. 일시보호가 가정보호 원칙을 실천하는 중간단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79) 각주 60)에 설명하였듯, 학대피해아동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에 따른 응급조치 연장, 응급조치 이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한 일시보호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도 ‘일시보호’로 본 결과이다.

80)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종료 이후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일시보호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조항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4> 안전에 따른 일시보호의 유형과 내용

일시보호 유형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보호대상 아동 종결		보호출산 아동 보호조치		입양대상 아동 선정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학대피해 아동 종결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일시보호조치 (아동일시보호시설)	빈도	12	6	5	4	3	6	36					
	%	19.7%	9.8%	8.2%	6.6%	4.9%	9.8%	59.0%					
일시보호조치(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양육시설) <sup>81)</sup>	빈도	-	1	-	-	-	-	1					1
	%	-	1.6%	-	-	-	-	1.6%					1.6%
일시보호조치(일시가정위탁)	빈도	-	-	-	-	-	-	-	3				3
	%	-	-	-	-	-	-	-	4.9%				4.9%
일시보호조치(일시가정위탁) ⇒ 피해아동보호명령(가정위탁)	빈도	-	-	-	-	-	-	-	1				1
	%	-	-	-	-	-	-	-	1.6%				1.6%
일시보호조치(아동일시보호시설) ⇒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양육시설)	빈도	-	-	-	-	1	-	-	-				1
	%	-	-	-	-	1.6%	-	-	-				1.6%
응급조치 <sup>82)</sup> ⇒ 일시보호조치 <sup>83)</sup>	빈도	-	-	-	-	8	-	-	2				10
	%	-	-	-	-	13.1%	-	-	3.3%				16.4%

81) 일시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아동이 아동양육시설로 전원되었던 사례이다.

응급조치 ⇒ 피해아동보호명령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빈도	1	-	-	-	-	3	2	6
	%	1.6%	-	-	-	-	4.9%	3.3%	9.8%
피해아동보호명령(가정위탁)	빈도	-	-	-	-	-	3 <sup>84)</sup>	-	3
	%	-	-	-	-	-	4.9%	-	4.8%
전체	빈도	13	7	5	4	18	14	61	
	%	21.3%	11.5%	8.2%	6.6%	29.5%	23.0%	100%	

82) 아동이 응급조치 3호(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로 분류되어 입소한 시설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통섭터가 포함된다. 응급조치 2호(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에 따라 아동을 학교 기숙사에 보호한 사례도 1건 있었다.

83)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통섭터로의 일시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84) 같은 가정의 아동 3명에 대한 일시보호이다.

(5) 중장기보호의 유형과 내용<sup>85)</sup>

「아동복지법」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일시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5조 제6항),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에 대해서만 일시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다(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sup>86)</sup> 사실상 법적 제한 없이 가정 외 보호가 지속되는 중장기 보호 형태가 다수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즉, 원가정과의 분리 에 대해 명확한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가정 외 보호 형태가 중장기 보호로 구분되고, 통계상 분류에 따르면 가정위탁, 시설보호(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입양 전 보호<sup>87)</sup>가 있다. 그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입양기관의 입양 전 보호’가 가장 많았고(39.3%), ‘아동양육시설’(25.6%), ‘가정위탁’(12.5%), ‘공동생활가정’(11.3%), ‘공동생활가정 또는 아동양육시설’(4.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 및 입양 전 보호’로 병행 조치된 경우도 6건 (3.6%)이다. ‘입양기관의 입양 전 보호’가 많은 이유는 A구에 입양기관이 소재한 영향으로 해석되며, 그렇다면 가정보호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시설보호가 주되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A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의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sup>88)</sup>은 모두 12개월 미만이었다. 국내·외

85) 보호조치 심의와 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무적 사전·대면심의 안건인데, <표 5>의 결과는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상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즉, 실제 보호조치 이행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특히, “가정위탁 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경우).

86)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기간은 지침상 3~9개월이며, 이후로 가정복귀 혹은 중장기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안내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5a: 250).

87)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가 입양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는 아동을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한다. 전자의 경우 통상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후자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4호의 조치 병행 결정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25b: 41).

입양통계를 보아도 3세 미만 아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sup>89)</sup>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양의 고려가 영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가정보호의 원칙 이행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5> 안전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 유형

중장기 보호조치 유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안전									전체 (빈도/ %)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연장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조치	보호 대상 아동 종결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조치	입양 대상 아동 선정	입양 대상 아동 종결	입양 대상 아동 철회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학대 피해 아동 종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2호)	-	-	-	-	-	-	-	2	-	2
	-	-	-	-	-	-	-	1.2%	-	1.2%
가정위탁(3호)	-	13	3	-	-	-	-	3	2	21
	-	7.8%	1.8%	-	-	-	-	1.8%	1.2%	12.5%
가정위탁 또는 아동양육시설(3호, 4호)	-	3	-	-	-	-	-	-	-	3
	-	1.8%	-	-	-	-	-	-	-	1.8%
공동생활가정(4호)	-	3	10	-	-	-	-	4	2	19
	-	1.8%	6.0%	-	-	-	-	2.4%	1.2%	11.3%
공동생활가정 또는 아동양육시설(4호)	-	3	-	-	-	-	-	4	-	7
	-	1.8%	-	-	-	-	-	2.4%	-	4.2%
아동양육시설(4호)	1	14	16	-	-	-	-	6	6	43
	0.6%	8.4%	9.5%	-	-	-	-	3.6%	3.6%	25.6%

88) 실제로 입양된 경우가 아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연이 고려되는 경우로서 ‘아동양육시설 및 입양 전 보호’, ‘입양기관 입양 전 보호’의 중장기 보호조치가 심의된 사례를 말한다.

89)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입양이 허가된 아동은 총 150명(65.5%)으로 3개월~1세 미만 아동이 75명(50%), 1~3세 미만 아동이 58명(38.7%)이다. 국외 입양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이 76명으로 96.2%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4.07.10.).

중장기 보호조치 유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안전									전체 (빈도/ %)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연장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조치	보호 대상 아동 종결	보호 출산 아동 보호 조치	입양 대상 아동 선정	입양 대상 아동 종결	입양 대상 아동 철회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학대 피해 아동 종결		
아동양육시설 및 입양 전 보호 (4호, 6호)	-	-	-	5	1	-	-	-	-	6	
	-	-	-	3.0%	0.6%	-	-	-	-	3.6%	
입양기관 입양 전 보호(6호)	-	-	-	-	22	26	18	-	-	66	
	-	-	-	-	13.1%	15.5%	10.7%	-	-	39.3%	
학대피해아동쉼터 (4호) <sup>90)</sup>	-	-	-	-	-	-	-	1	-	1	
	-	-	-	-	-	-	-	0.6%	-	0.6%	
전체	빈도	1	36	29	5	23	26	18	20	10	168
	%	0.6%	21.4%	17.3%	3.0%	13.7%	15.5%	10.7%	11.9%	6.0%	100.0%

(6) 보호조치의 종결 또는 중지 사유

보호조치 종결의 안전을 분석한 결과, 보호 (계속) 중인 경우와 입양의 성립을 제외한 가장 많은 보호조치 종결의 사유가 ‘가정복귀 (7.8%)’였고, ‘연령 도달’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3.1%)이 차례로 많았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복귀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검토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보호조치의 ‘중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군 입대, 해외체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 일시중지가 가능하다.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보호조치를 유지(재개)·변경 또는 종결하게 된다.<sup>91)</sup> 이러한 일시중지는 ‘종결’과는 구분되지만, 현재 보호 중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호조치 종결과 함께 제시하였다.

90) 공동생활가정 중장기보호 중 시설 내 학대 발생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분리 보호된 사례이다.

91)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12-113쪽 참조.

<표 6> 보호조치 종결 또는 중지 사유

사유	빈도	%
국내 입양	171	35.8
국외 입양	100	21.0
가정복귀	37	7.8
연령 도달	15	3.1
타법 시설 입소	7	1.5
보호 일시 중지	2	0.4
아동 사망	1	0.2
보호 중 또는 일시보호 중	136	28.5
정보 없음	8	1.7
<b>전체</b>	<b>477</b>	<b>100.0</b>

(7) 보호대상아동 최초 발생원인에 따른 가정 외 보호기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가정 외 보호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정 외 총 보호기간은 34.2개월(표준편차 45.5개월, 중위값 18.2개월)로 최소 0개월부터 최대 200개월까지로 나타났다. ‘부모 빈곤 실직’, ‘부모이혼’, ‘부모사망’으로 인한 경우 순으로 가정 외 보호기간이 길었다. 보호기간을 단순 수치로 제시한 해당 결과는 431명의 아동 중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을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145명의 아동 중에서도 가정 외 총 보호기간을 산출할 수 있었던 58명 아동의 자료에 한정된다. 표준편차에서 알 수 있듯 그 결과값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보호기간의 실태나 경향성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보호기간에 대한 <표 7>의 결과에서도 찾아볼 만한 시사점은 몇 가지 있다. 먼저 부모사망의 사례는 일시적 대리 보호가 아닌, 입양과 같은 영구적인 가정환경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유기 아동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대부분 임시적 개념의 시설 거주나 가정위탁<sup>92)</sup> 보호가 조치되는 실태는 아동의 영구

92) 시설보호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보호된 아동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부재

적 가정환경 모색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회의록에서 ‘양육의 어려움’으로 표현된 빈곤,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는 가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의 장기화된 가정 외 보호를 예방하고 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현실을 시사하는 자료인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에 비추어 본 가정 외 보호기간의 결과는 범국가 단위의 아동권리 이행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표 7> 최초 발생 원인에 따른 가정 외 보호기간

최초 발생원인	사례 수 <sup>a</sup>	일시보호 기간 (개월)			가정 외 총 보호기간(개월) <sup>93)</sup>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유기(베이비박스 포함)	12	2	0.0	0.0	2	24.5	17.7
미혼부모·혼외자	45	7	0.6	0.8	17	7.8	14.4
학대	49	37	7.8	9.5	20	32.6	26.9
부모 빈곤·실직	11	2	2.0	1.4	5	108.6	72.9
부모사망	8	2	2.0	0.0	2	102.5	137.9
부모 질병	2	2	1.0	0.0	1	19.0	-
부모 교정시설 입소	6	1	0.0	-	1	35.0	-
부모이혼	4	0	-	-	2	106.0	48.1
보호출산	8	0	-	-	0	-	-
<b>합 계</b>	<b>145</b>	<b>53</b>	<b>5.7</b>	<b>8.6</b>	<b>58</b>	<b>34.2</b>	<b>46.5</b>

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자체장이 시설장이 되지만,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장이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탁부모는 개별 의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부모(친권자)가 부재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지정이 필수적이지 않은 법적 공백에 기인한 결과이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친인척이나 지인이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돌보는 형태도 영구적 가정보호로 활용되는데,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한 유형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93) 가정 외 총 보호기간은 보호종료된 아동 58명에 한하여 산출하였으며,

## (8) 심의 방식별 안건 및 내용

마지막으로, 심의 방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사전심의는 총 157건(32.91%), 사후심의는 총 124건(26.00%), 사후보고가 총 196건(41.09%)이었다. <표 8>부터 <표 10>의 결과는 <표 2>의 안건명에 따른 현황과 차이가 있다. <표 2>는 회의록에서 쓰인 안건명을 그대로 유형화한 것이고, 이하의 표들은 안건명과 주요 내용을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제1항이 제시하는 심의 사항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sup>94)</sup> 분류 재구성을 통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실태를 보다 체계

---

보호대상으로 분류된 시점부터 보호가 종료된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계산하였다. 가정 외 총 보호기간 정보가 있는 아동 사례와 최초 발생원인 정보가 있는 아동 사례 수 사이의 차이는 ‘보호 중’인 아동의 수이다. 회의록상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수는 가정 외 보호기간을 산출하지 않았다. 즉, 가정 외 총 보호기간 정보가 기록된 경우는 일시보호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이후 보호가 종료된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 94) 구체적으로, 안건명 “보호출산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입양대상 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조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 안건명 “입양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과 “학대피해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안건명 “입양대상아동 종결에 관한 사항” 중 입양 성립이나 타법 시설 입소에 따른 보호 종결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 종료에 해당하지만, 입양알선 곤란아동으로 보고되었다면 보호조치 변경이 심의되어야 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안건명 “보호대상아동 보호 일시중지도 그 실질이 보호조치의 변경이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혹은 보호연장아동의 보호 일시중지라면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안건명 “학대피해아동의심아동 학대여부 사례판단에 관한 사항”, 안건명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친족보호 아동 가정환경 점검은 기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심의 유형별로 아동보호체계 운영의 구조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1) 사전심의

먼저, 사전심의의 2호 보호조치 심의 중 부결(보류 또는 승인불가 등)된 3건은 공통적으로 원가정 양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친모가 가정위탁 보호를 의뢰한 사례에서는 영아기 때의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이 우선 제안되었고,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뢰 건은 숙려기간 7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또한, 입양을 의뢰하였으나 부결된 사례에서는 이후 친모가 직접 양육하게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 결과를 볼 때, 가정위탁은 현행 보호조치 중 입양 외에 유일한 가정형 보호에 해당하지만, 그 비율이 현저히 높지는 않았다. 이는 A구라는 하나의 자치구 관할 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자원의 규모, 연계망 등)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보호조치 변경(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변경 포함) 사례 30건 중 10건(약 33.3%)이 가정위탁으로 변경, 11건(약 36.7%)은 공동생활가정 보호(공동생활가정 또는 아동양육시설 입소 포함)로 변경이었던 결과는 아동의 연령과 의사,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전심의에서 입양대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의 실제 입양 성립 여부는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의 전 과정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만큼, 향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에 입양의 조치 경과와 결과에 대한 정기적 검토도 포함될 필요를 짚을 수 있다.

<표 8> 사전심의 안건의 내용과 현황

심의 방식	위원회 심의 (법 제12조 제1항)	회의 안건	심의 결과	내용	건 수
사전심의	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49.04%)	보호대상아동 선정	승인	- 제15조 제1항 3호 중장기 보호 - 제15조 제1항 4호 중장기 보호 - 제15조 제1항 3/4호 병행 중장기 보호 - 제15조 제1항 6호 중장기 보호 - 제15조 제1항 4/6호 병행 중장기 보호 - 제15조 제6항 일시보호조치	44
			부결	- 일반가정위탁 - 입양대상아동 선정 부결 및 3개월 후 재심의 - 보호출산아동 입양대상아동 선정 및 아동양육시설 보호 보류	3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	승인	- 제15조 제1항 4호⇒3호 - 제15조 제1항 4호⇒4호(시설 유형 혹은 거주시설 변경) - 제15조 제1항 4호⇒6호 - 제15조 제1항 6호⇒3호	14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변경	승인	- 근거 변경(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연장	15 1
	3호.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24.20%)	가정복귀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보호자 등의 가정복귀 신청 -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 입양대상아동 부모 동의 철회	21
			부결	- 부결(2) 및 보류(1)	3
		연령도달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회의 당시 17세, 18세 보호대상아동 <sup>95)</sup>	7
	4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26.11%)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	승인	- 회의 당시 17세, 18세 보호대상아동	26
			승인	- 회의 당시 19세, 20세 보호연장아동	8
		보호연장 후 보호종결	승인	- 회의 당시 19세 이상인 보호대상아동	7
8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0.65%)	학대여부 사례판단	보류	- 아동권리보장원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다시 안건을 상정하고 판단함	1	

## 2) 사후심의

사후심으로 진행된 ‘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서 ‘보호대상아동 선정’ 중 ‘입양대상아동 선정’ 안건은 모두 2021년 7월 28일 회의 안건으로, 이후로 2호의 보호조치는 모두 사전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고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이 입양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제도 전환과 관련이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입양기관의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입양이 결정되었던 사례로서,<sup>96)</sup> 입양기관에서 입양대상아동으로 선정된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사후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과 아동권리 인식 수준이 실질적 영향을 미친 정도도 확인된다. 사후심의에서 ‘3호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된 101건의 안건 중 10건은 ‘가정복귀에 따른 보호 종결’이었고, 이 중 9건이 당초 미혼부모·혼외자를 사유로 입양이 의뢰되었으나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를 철회한 경우였다. 9건 중 6건의 사례는 친인척의 양육 지원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 의사를 밝히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친생부모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달라졌다고 보다는, 입양 초기상담부터 입양대상아동 선정 이후의 양육상황 점검 등 전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후심의 안건 중 ‘4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

95) 18세 이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심의에 해당하나,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또는 연 나이 20살(18세)에 이른 뒤 보호 종결 안건이 논의된 사례가 상당했다. 회의 일정이나 행정 처리상의 실무적 여건에서 기인한 결과로 짐작되며, 따라서 18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안건은 제3호의 안건으로 분류하였다.

96)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사항’에서 ‘보호연장아동의 보호 일시중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행 지침은 보호 일시중지를 수급비 지원과 같은 예산 및 행정 처리 중심으로 설명할 뿐, 여전히 공적 보호체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 일시중지의 기간 경과 후 재심의를 거쳐 아동의 상황과 필요를 필수로 살피도록 하는 절차 보완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표 9> 사후심의 안건의 내용과 현황

심의 방식	위원회 심의 (법 제12조 제1항)	회의 안건	심의 결과	내용	건수
사후 심의	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8.06%)	보호대상아동 선정	승인	- 입양대상아동 선정	6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승인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1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변경	승인	- 근거 변경(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2
	3호.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81.45%)	가정복귀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4호) 후 가정복귀 - 입양대상아동 입양동의 철회	10
		연령 도달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회의 당시 18세 보호대상아동	1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국내 입양 성립 - 국외 입양 성립	90
	4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9.68%)	보호대상아동 보호 연장	승인	- 회의 당시 18세 보호대상아동	5
		보호연장아동 보호 연장	승인	- 회의 당시 19세 이상 보호연장아동	5
		보호연장아동 보호 일시중지	승인	- 회의 당시 19세 이상 보호연장아동 보호 일시중지	2
	8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0.81%)	입양대상아동 사망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입양대상아동 사망	1

### 3) 사후보고

사후보고의 197건 중 8건이 ‘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이 중 3건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서 승인된 보호조치 사항의 이행에 관한 건이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안건으로 사후보고된 1건은 국내에 체류하던 유일한 보호자가 사망한 외국인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례이다. 대상 아동은 보호자 사망이 인지된 후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배치되었는데, 당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본국의 친족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제4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영유아 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양육시설 보호조치를 승인하였다. 해당 회의는 법 개정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되기 이전에 개최된 것으로, 이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승인되어 아동양육시설로 전원된 결과를 2021년 6월 30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에 대한 안건은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대상이나, 이 경우는 본국의 친족이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일시 및 중장기 보호조치가 승인된 상황이었고,<sup>97)</sup> 그에 따라 본국으로 출국한 결과가 사후보고 된 특수성이 있다.

사후보고의 ‘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중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에서 ‘입양알선 곤란 아동의 보고’는 총 5건으로, 모두 타 지자체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양 전 보호 중이던 아동에 관한 사례였다. 이번 분석은 A구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양알선 곤란 아동의 안건은 모두 사후보고 형태로 논의된 것이다. 다만, 이들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은 해당 아동양육시설 관할의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었을 것이므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으로 분류하였다.<sup>98)</sup>

마지막으로, ‘8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97) 연구자들은 이 사례에서 취해진 일시보호와 중장기 보호조치 사유를 “부모사망”으로 분류하였으며, 보호조치 종결 사유를 “가정복귀(본국으로 출국)”로 의율하였다.

98) 즉, A구에서는 사후보고 사안이 될 수 있지만, 보호조치를 심의하는 타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는 사전·대면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건 중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관련하여 양육상황 점검이 사후보고된 안건이 1건 있었다. 이 사례는 아동을 양육하던 친모의 아동학대가 이전의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친족(친부)에 의한 보호·양육의 보호를 승인한 사례였다. 그런데 해당 친부는 당시 동거하던 지인이 있었고, 과거에 가정폭력이 문제 된 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육상황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되었다. 해당 사례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적 보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사후보고 안건의 내용과 현황

심의 방식	위원회 심의 (법 제12조 제1항)	회의 안건	심의 결과	내용	건수
사후 보고	2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08%)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승인	- 제15조 제1항 4호 중장기 보호	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변경	승인	- 입양알선 곤란 보고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	5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변경	승인	- 근거 변경(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2
	3호.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95.41%)	가정복귀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4호) 후 가정복귀	1
				- 입양대상아동의 입양동의 철회	5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 종결	승인	- 국내 입양 성립 - 국외 입양 성립	111 70
	8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51%)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승인	- 학대피해아동 양육상황 점검 보고	1

#### IV. 결론

A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지난 3년 6개월간의 운영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라는 국가정책의 방향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 연구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총 477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호조치의 실행 현황, 심의 체계의 구조적 특성, 실무 운영의 실제, 아동권리 실현의 수준 등을 다층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써, 먼저 사례결정위원회의 제도적 안정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A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 대면회의(온라인 포함)를 개최하며 아동보호에 관한 신속한 논의를 도모하였다. 관내에 입양기관, 보호출산의 지역상담기관 등이 모두 있어 복합적인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정례화된 회의를 추진한 결과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례결정위원회 연도별 목표치가 2021년 3회, 2022년 8회, 2023년 8회, 2024년 7.9회였던 것<sup>99)</sup> 대비 확연히 높은 수치인데, 회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과 지자체 담당자 간의 긴밀한 교류도 가능했을 것이고, 심의의 신뢰성은 물론 보호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보호조치 안건 중 절반 이상에서 가정형 보호(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입양 등)가 심의된 점은, 탈시설화와 가정보호라는 정책적 지향이 일정 부분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법령 개정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 변화가 심의 경향에 미친 영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2022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보호연장 심의 건수가 증가하였고, 즉각분리 제도 시행 이후에도 무분별한 분리보다는 아동의 상황에 맞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

<sup>99)</sup>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 실적(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의 총합/229(시·군·구 개수))은 2021년 6.5회, 2022년 7.9회, 2023년 7.6회였다 (보건복지부, 2024.12.12.: 365).

제도의 책임 있는 운영을 보여준다. 셋째, 보호출산과 같이 최근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연계된 안건 역시 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아동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혹은 가정위탁 보호조치로 변경된 사례는 모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였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가정복귀가 결정된 이후의 양육상황 점점을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 연구에는 다음의 한계점을 고려한 해석이 요청된다. 첫째, 심의 안건의 유형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유사한 사안이 상이한 유형으로 처리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고(예를 들어, 입양대상아동의 선정이나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사후심으로 논의, 입양 성립의 안전을 사후심으로 논의), 보호 사유나 일시보호기간, 또는 사전심의 이후의 실제 보호조치가 이행된 결과(특히 ‘아동양육시설 보호 및 가정위탁 보호 병행 조치’와 같은 경우) 등 주요 정보가 회의록에 누락되거나 일관되지 않게 기록된 점도 실태 분석에 제약이 되었다. 이는 회의록 기반 코딩 과정에서 해석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향후 회의록 작성의 표준화 및 기록 항목의 정례화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둘째, 이 연구는 특정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아동보호 자원과 운영 여건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구체적 방식에 대한 정보도 회의록에는 거의 없어, 아동권리 실현 측면에서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격차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의 분석틀 보완과 동시에, 아동의 연령, 상황 등을 고려한 차등화된 의견 청취 방식의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 도입 이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시기의 회의자료 및 세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전후 비교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관련 자료가 확보된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기의 보호조치 실패와 사례결정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실질적 영향을 보다 명확히 논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례결정위원회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아동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 기구로 기능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심의 기준의 명료화, 회의록 작성의 표준화,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보완,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마련도 강조하고 싶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제도적 의의가 아동권리 관점에서 더욱 강화되길 바라는 바이다.

(논문접수일: 2025. 05. 16, 논문심사일: 2025. 06. 09, 게재확정일: 2025. 06. 18)

##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보고서 -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원, 2019.
- 신항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
- 보건복지부. 2023년 국내의 입양통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1482232&tag=&cg\\_code=&list\\_dept=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1482232&tag=&cg_code=&list_dept=1), 2024.07.10.
- 보건복지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9522&tag=&nPage=7](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9522&tag=&nPage=7), 2019.05.23.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2024.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2025a.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483899&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483899&tag=&nPage=1), 2024.12.12.
- 보건복지부.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b.
- 신수경. “즉각분리가정복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21.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기관 현황: 입양기관.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rList.do?mi=1122>, 2025.05.10.
- 이상정.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보건복지포럼 제310호, 2022.
- 이주연, 이정은, 이상정, 임성은, 조정우, 김희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23-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정선욱, 김형태, 김미숙, 공영숙, 이수천.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2호』, 2023.
- 통계청. 3-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24.
- 통계청.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25.
-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https://kostat.go.kr/board.es?>

- 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35209, 2025.02.26.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5 (2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 6)(CRC/C/GC/5), 2003.
-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Justice and Multicultural Affairs. Family group meeting convenor handbook. <https://www.families.qld.gov.au/our-work/child-safety/resources-publications/family-group-meeting-convenor-handbook>, 2022.
- HM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23: A guide to multi-agency working to help, protect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49a7b67c7ba25f610c7db3f/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_2023\\_-\\_statutory\\_guidanc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49a7b67c7ba25f610c7db3f/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_2023_-_statutory_guidance.pdf), 2023.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 Introduction to Kafalah: Regional learning platform on care reform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https://www.unicef.org/esa/media/12451/file/An-Introduction-to-Kafalah-2023.pdf>, 2023.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RES/64/142), 2010.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ights of the Child(A/RES/74/133), 2020.
- Socialstyrelsen. Förebyggande insatser enligt LVU - En vägledning om tillämpning av 22 § LVU. <https://www.socialstyrelsen.se/publikationer/forebyggande-insatser-enligt-lvu-en-vagledning-om-tillampningen-av-22-lvu-2019-6-13/>, 2019.
- Socialstyrelsen. Handbok för socialtjänsten - barn och unga. Stockholm: Socialstyrelsen. <https://www.socialstyrelsen.se/publikationer/utreda-barn-och-unga-handbok-for-socialtjansten-2023-6-8657/>, 2023a.
- Socialstyrelsen. Utreda barn och unga - handbok för socialtjänsten. <https://www.socialstyrelsen.se/globalassets/sharepoint-dokument/artikelkatalog/handbocker-juridisk-handbok/2023-6-8657.pdf>, 2023b.

<Abstract>

**The Role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Case Determination Committees for Ensuring Rights of the Child  
: Focusing on a Case Study of District A in Seoul\***

Heejin Kim \*\* · Sangwon Kim \*\*\* · Miyoun Lee \*\*\*\*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and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local case determination committees with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grounded in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and the principle of family-based care as emphasiz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study furth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by analyzing the meeting records from District A in Seoul. Introduced in 2021, the local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serves as a key mechanism symbolizing the transition toward a public-centered child protection system, by making formal decisions regarding the separation of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and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care arrangements. Composed of various experts, the

---

\* This paper expands and refines the findings of the “2021–2024 Performance Analysis of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in District A,” conducted as part of the 2025 Child Rights Monitoring Project led by the District A Child Rights Ombudsman.

\*\* First Auth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ungkonghoe University; Attorney at Law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Child Studies, Hanshin University

\*\*\*\* Master’s Program,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Committee structures its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the assessments of child protection officers, while reflect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the principle of family-based care. The analysis of three and a half years of meeting records in District A reveals institutional stabilization through regularized meetings, responsiveness to developments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and efforts to uphold children's right to be heard. Moving forward, the continued refine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deliberative framework, along with measures to realize rights of the child to particip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d effectiveness of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Keywords: Child Rights, Child Protection System, Case Determination Committee